

[첨부]

2019년 부산지역본부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(안)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65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5점	전년도 50인미만 전업종의 사고 사망만인율 대비 소업종의 사고 사망만인율 비율 ※ 전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는 '18년 11월 확정통계 적용 ▶ 2배 이상 15점 ▶ 1.5~2배미만 10점 ▶ 1~1.5배미만 5점 ▶ 1배미만 0점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0점	소업종의 재해율, 재해율 순위를 10개 소업종 단위로 그룹화 하여 1점씩 차감 ※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50인 미만 전년도 11월 확정통계 사용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근로자수는 ERP 통계 적용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	10점	※ 장년·청년·외국인근로자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로 확인 [장년근로자(63년생 이전), 외국인 등록번호(5,6), 청년(89년생 이후)] ※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, 지게차(좌입식)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	5점	※ 사진첨부 시 인정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※ 현장확인 시 허위 및 사진과 실물이 다를 경우 대상선정 취소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15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, 강소기업,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	10점	※ 인정서(유효기간 내) 및 대상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 (단, 공생협력 협력업체 선정지표 분리)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(기술지원 실시 사업장)	5점	
■ 지역별 자율 항목	20점	
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(인정기간 내)	10점	
⑩ 2018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사업장	5점	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기준 가중치 부여 (서류 제출 필요없음)
⑪ 2017, 2018년도 유해위험기계등 안전검사* 실시사업장 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(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) 참조	5점	
■ 가점항목(고용·산업위기지역)	+10점	
계	100점	(단, 100점 초과시 100점 적용)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가점항목→공통항목(①→⑥)→우수항목(⑦→⑧)→자율항목 (⑨→⑩→⑪)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